제5장
수수료, 과태료

제1절 수수료
제2절 과태료

제1절
수수료

0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0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므로 선순위 유족은 1순위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 2~3순위 순으로 함

0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
-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면제

0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발급대상자(수급자)의 등본을 제3자(일반인)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 발급대상자(일반인)의 등본을 제3자(수급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0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 · 재난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

• 따라서 지문 변경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06 등 · 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이 없으나 관련업무 사무편람(2012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면제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전산자료 제공의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에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어야 가능함



0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대표번지와 나머지 지번이 같이 기재. 전입세대열람신청을 대표번지 100번지외 3필지(101~4번지) 101동 201호로 하였는데, 수수료는 필지별로 4건인지? 물건지별로 1건인지?

회 신

• 물건지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 부과 처리



0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을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시행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0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교부신청 과정에서 최종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등 절차 시 수수료의 면제가 가능한지?

회 신

• 주소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절차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전산업무(주민등록관리시스템 [4160] 중앙센터개인열람)처리 시에도 신청인 란에 신청인외 인적사항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입력하고 용도는 공용으로 처리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데,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하여 남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살아있는 국가유공자의 처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회 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족 중 선순위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유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 주민등록증 사진이 변하여 알아 볼 수 없을 경우 무료 재발급 가능 여부

회 신

- 본인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대상이나, 본인의 고의 · 과실 없이 주민등록증이 시간경과 및 기타 사유로 사진이 흐려졌거나, 성명 · 생년월일 등의 변경,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한 경우 등은 무료

  ※ 다만, 본인이 성형수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 대상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회 신

-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규칙 제11조에 의해 발급수수료가 면제됨
- 따라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반납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고, 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유에 성명변경으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 ○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성명 등의 오기)
- ○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 자연적 재해 · 재난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2006. 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 ○ 1999년 일제 경신 이전 주민등록증은 해당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료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 2006.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수수료는?

회 신

•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등.초본 발급 관련 장애인 면제 규정이 없으나, 00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는 장애인 면제 규정이 있음

회 신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며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다면 가능

제2절
과태료

15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 만 17세 신규주민등록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에 외국유학으로 발급지연이 된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

회 신

• 신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발급기간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유학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

16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무단전출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기 위해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요령

회 신

•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해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한 경우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17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 법에서 과태료 미납 시 제(諸)신고 또는 신청 가능여부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지?

회 신

• 제(諸)신고 또는 신청은 과태료 납부유무와는 관계없이 접수 처리하여야 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 주어야 함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및 사전통지 업무처리요령

회 신

- 과태료의 처리절차는 부과와 징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는 과태료 징수 시 감경,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과태료 부과 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3/4까지 감경부과 가능하고 징수 시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 감경징수 가능
-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반드시 사전통지 필요
- 다만, 사전통지서와 감경고지서를 동일 고지서로 발부 가능

〈 사전통지 시 주의사항 〉

질서법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의무를 지연한 경우 최고(공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할 것을 최고(공고)할 수 있으므로 최고(공고) 후에도 발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 세대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신청을 하는데 신고의무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회 신

•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세대 전부가 동일 거주지 내 재등록신청을 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과태료는 세대주에게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하나의 세대가 전부 거주불명 등록된 후 각각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등록 신고한 본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

2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회 신

•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사유별 기간을 제외하고 발급신청기간을 주며, 이 기간 내에 미신청 시는 과태료를 부과

※ 유학 등 해외체류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발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부과기간에 포함

22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 과태료부과 기준은 거주불명 등록일부터인지 최고 · 공고 익일부터인지?

회 신

• 과태료 부과시점은 거주불명 등록 처리일이 아닌 공고기간 만료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예를 들어 4월 5일 거주불명 등록되고 4월 1일 공고가 만료되었다면 4월 2일이 과태료 부과 기산일임



2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보내고,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 · 면 ·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 내에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회 신

•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는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해야 함

• 이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발급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됨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또는 공고한 사항 및 담당자 성명을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해야 과태료 부과의 근거되므로 유의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 결여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회 신

• 당사자가 제시한 소명자료(의사진단서 등)을 근거로 읍면동장이 과태료 부과(경감) 여부를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등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가능

25 직권 거주불명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 직권 거주불명등록자를 사망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민등록 정리절차

회 신

• 사망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며,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망신고 말소 사항을 추가 기록

26 거주불명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주불명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 과태료 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병과 가능여부

회 신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의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과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2이상의 질서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2개중 높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면 됨

27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지연사유서는 과태료 경감사유가 있을 때만 받는 것인지?

회 신

• 과태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만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처리

28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려환자인 경우 사실조사기간 외에도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실조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감경 징수가 가능
- 따라서, 행려병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초 과태료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가능

(예 : 최초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인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 경감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자가 자진납부 시 1만원 기준 20% 감경된 8천원을 과태료로 최종 징수)

29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회 신

-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40조 제4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또한, 과태료는 거주지(전입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30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 사실조사 기간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올바른 과태료 부과 및 감경방법?

회 신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 · 군 · 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3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고 4분의 3까지 경감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감경하여 징수가 가능함(예, 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2만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감경하여 2만원 징수)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교통범칙금 등)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적용)

31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거짓의 주민등록 사실 신고)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범죄입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신

-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벌칙 대상임

32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시 과태료 부과

☞ 세대원 중 동거인을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시 14일이상 공고 후(2017. 주민등록사무편람 70P) 처리함

☞ 이 동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법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회 신

• 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신고 된 동거인에 대한 공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등록 절차의 최고. 공고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도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이 아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33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회 신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란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확인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회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질의 · 회신 사례집]

2018년 2월 일 인쇄
2018년 2월 일 발행

판 권
소 유

발행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인쇄처 : 포인트테크

〈주민등록 질의 · 회신 사례집 작업 참여 및 협조 공무원〉

• 행정안전부	김군호	• 인천광역시(동구)	김영주	• 충청북도(괴산군)	김지영
• 행정안전부	김진욱	• 광주광역시(동구)	김민녕	• 충청북도(단양군)	곽도윤
• 행정안전부	이현경	• 광주광역시(남구)	안성은	• 충청남도(공주시)	강은하
• 행정안전부	김혜민	• 광주광역시(광산구)	문성현	• 충청남도(청양군)	안시우
• 행정안전부	윤보라	• 대전광역시	황미숙	• 충청남도(홍성군)	이봉재
• 행정안전부	류정일	• 대전광역시(서구)	권수영	• 전라북도(전주시)	홍아미
• 행정안전부	정영희	• 대전광역시(대덕구)	양희진	• 전라북도(남원시)	신현정
• 행정안전부	최성규	• 울산광역시(중구)	박아제	• 전라북도(남원시)	정보경
• 서울특별시(강남구)	이수정	• 울산광역시(남구)	김현주	• 전라남도(목포시)	최영희
• 서울특별시(강남구)	최한나	• 울산광역시(울주군)	권지혜	• 전라남도(무안군)	배 숭
• 부산광역시	김영현	• 세종특별자치시	정영주	• 전라남도(함평군)	박화숙
• 부산광역시(동래구)	김성미	• 세종특별자치시	염다혜	• 경상북도	신부현
• 부산광역시(연제구)	조희지	• 경기도	선병주	• 경상북도(구미시)	임정희
• 대구광역시	이순덕	• 경기도(수원시)	선유미	• 경상북도(영주시)	박송희
• 대구광역시(동구)	신수진	• 경기도(김포시)	박정현	• 경상남도	김미경
• 대구광역시(남구)	서영아	• 강원도	차명진	• 경상남도(함양군)	감재연
• 대구광역시(수성구)	조경희	• 강원도(춘천시)	엄혜용	• 경상남도(함양군)	유수진
• 인천광역시	조병찬	• 강원도(원주시)	최정완	• 제주특별자치도	고석훈
• 인천광역시(중구)	김숙희	• 충청북도(청주시)	최연호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고유라

〈비매품〉